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278 발의연월일: 2022. 4. 15.

발 의 자: 김철민ㆍ이병훈ㆍ박성준

도종환 • 윤후덕 • 한준호

이정문 · 오영환 · 김민철

맹성규 · 유동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년 당시 199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,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음.

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고, 현재까지도 법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

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5479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 부칙(법률 제6761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,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1160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483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5479호	법률 제5479호
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	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
法律改正法律 부칙	法律改正法律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<u>2022년</u>	제2조(유효기간) <u>2027년</u>
<u>12월 31일</u> 까지 효력을 가진다.	<u>12월 31일</u>